

2. 주요내용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0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상봉이엔씨(차동화) ② (주)콘텍이엔지(박성기)

나. 전화번호 : ① 031-336-6370 ② 070-4285-6058

2. 명칭 : 폴리머 혼화제로 개질된 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한 포장 일체식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B&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의 유지성(유동성) 확보, 단위수량, 감소, 체적변화 저감 등 기존 화학혼화제의 역할과 함께 콘크리트 경화후의 내구성능(투수저항성, 동결융해저항성 등) 확보가 가능하도록 폴리머 혼화제를 첨가하여 제조된 고성능 콘크리트와 교량 바닥판 시공 시 측면거푸집 외부에 면마무리 장비의 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강된 캔틸레버부 브라켓과 U-Bolt로 고정시킨 브라켓 연결부 기술을 활용하여 피복두께와 평탄성 확보가 용이하고 작업자의 이동 공간제공을 통한 안전성 향상, 별도의 교면포장 시공공정 불필요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도록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포장 일체식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범위>

교량 바닥판 측면거푸집 외부에 데크피니셔를 거치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캔틸레버부 브라켓 장치와 폴리머혼화제로 개질시킨 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마무리 하는 신설 및 교량 개량 공사에 적용 가능한 포장 일체식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2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2. 대표자 : 정호섭 (기존 : 백석현)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4. 등록연월일 : 2005. 5. 15.
5. 주된 사업
 - 해양정신에 입각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지도자 양성
 - 회관, 연수원, 야영장의 설치, 관리 및 청소년관련 시설의 위·수탁 운영 사업
 - 각종 해양교육훈련 및 수상레저활동
 -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활동
 -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 및 간행물 발간
 - 지역사회 봉사활동
 - 환경 보호 및 영토수호 활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 위·수탁 운영사업

●문화재청공고제2018-14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4번지 등 52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문화재청장